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7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민홍철・이재강・박용갑

문대림 • 이연희 • 한준호

정준호 • 한정애 • 이건태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 지 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역도로 건설의 예산편성 기준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상한액의 임의적 설정을 방지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광역도로: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 2.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해당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3.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공영차고지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 공되는 공영차고지: 해당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 용의 30퍼센트
- 4.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 5.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
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	정 지원 등) ①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u>대통</u>	<u>다음 각</u>
<u>령령으로 정하는 바</u> 에 따라 국	호의 구분
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u><신 설></u>	1. 광역도로: 해당 광역도로의
<u><신 설></u> <u><신 설></u>	전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 장: 해당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트 3.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공영 차고지 중 화물자동차운수사
<u><신 설></u>	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해당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 트 4.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시 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

	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
	<u>E</u>
<u> <신 설></u>	5.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시
	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
	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
	<u>E</u>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